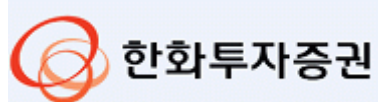


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권유문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080-851-8282

한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권유문서

본 계약권유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7조, 동 법 시행령 제 98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과 고객간에 랩어카운트(Wrap Account)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교부합니다.

□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1. 투자일임의 범위

- 1)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 투자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을 반영한 투자자유형별 투자가능 랩서비스 운용 유형에 적합한 자산배분
- 2) 운용 유형별 투자대상 및 운용조건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의 일임투자 운용
-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4) 기타 투자일임과 관련된 부수 업무

2.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1) 회사가 투자일임재산을 일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자본시장법 제 3 조(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회사가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 중에서 고객이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정한 운용모델과 운용조건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일임계약시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에 원활하게 투자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랩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운용 계좌들이 개설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유형별로 투자가능한 랩서비스 운용 유형은 <별표> 투자자유형과 랩서비스 운용 유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일임 업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고객상담 및 투자자정보 분석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계획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투자자정보를 서면 등으로 파악합니다. 고객이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거나 일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이 제한됩니다.

2. 고객 유형별 투자가능 운용모델 확인단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 투자자정보 진단결과와 투자자의 개별성 및 위험감내도를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랩서비스 운용 유형을 확인하고 투자자유형보다 위험도가 높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은 제한합니다.

3. 계약체결 단계

회사는 고객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일임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고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투자일임재산 운용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정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고객별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5.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의 방법

1.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운용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서 운용조건이란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합니다.

- 1) 거래소종목, 코스닥종목에 대한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운용모델에 따라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한국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회사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여부(회사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아니한 투자자산은 제외)
- 4)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에 대한 투자여부(당사는 투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기타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따른 파생상품 투자여부와 투자금지종목 그리고 기타 요청사항
- 6) 주식, 채권, 현금성자산 등에 대한 자산배분비율(맞춤형에만 적용)
- 7) 목표전환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목표전환수익률의 지정 등
- 8) 해외선진국 및 이머징국가에 대한 투자여부(고객이 선택한 운용모델에 따라 투자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합니다
- 5. 장내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에 신규주문은 불가합니다. (단, 개인투자자 자산보호, 적시에 청산/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청산/취소 행위는 가능합니다.)
- 6. 장내파생상품 계약의 경우 투자일임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은 투자자 본인의 투자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내부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운용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
 - (2) 운용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
 - (3) 회사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운용분리를 위한 통제장치
 - (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고객의 의무와 책임

- 1. 회사의 의무와 책임
 - 1)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설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 2) 회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3)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합니다
 - 4)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투자자산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할 법인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2) 성과보수 : 계약기간 동안의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수수료
 - (3) 중도해지수수료 :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
 - (4) 선취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시 운용개시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운용수수료
- 2)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 및기타 계좌관련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 3)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는 별도로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4) 제3)항의 세금과 관련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 중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 부과되는 위탁매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동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의 지급 방법
- 1)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자산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 2) 고객은 제2항 제1호의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내에 회사와 협의한 방법에 의하여 고객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 등을 수수료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한 후에 수수료의 사용을 위하여 회사가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협의한 방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한(5영업일) 후에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사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회사가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고객계좌의 현금 부족 등으로 수수료 및 연체료가 전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수수료 및 연체료를 전부납부할 때까지 계좌 내 고객 자산에 대해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5)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만을 징수하고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1) 고객이 회사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이 운용된 경우
 - (3)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방법

- 1. 투자실적의 평가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성과의 산정방법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금액을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금액 증감률로합니다.
- 3. 투자결과에 대한 고객 통보 방법

회사는 투자일임보고서를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은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투자일임보고서의 발송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 및 운용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한 발송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 투자일임 계약개시 시점의 재산형태 및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

- 1. 고객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 운용유형(모델)별로 회사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금액)을 예탁하여야 합니다.
- 2. 계약 시 예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증권시장 상장주식, 집합투자증권 등 입니다. 예탁 가능한 재산은 회사가 추가로 지정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종료 시점에서의 재산 반환 형태는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투자자산 등으로 선택 가능하나 투자자산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로 한정합니다.

□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하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고객이 선임한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운용조건 및 투자일임에 관한 회사의 기준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일임을 수행합니다.
5.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6.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변경이 가능합니다.
7. 제 6항의 단서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8. 고객이 담당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또는 계좌 이관(관리지점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좌가 미관리 상태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임계약기간 및 계약의 연장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고객에게 계약종료일 및 계약의 갱신여부를 통지합니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3. 계약일은 랩 계좌 운용모델의 최초 설정일부터 기산합니다. 단, 계약일을 사전에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합의일부터 기산합니다.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고객은 서면 또는 전화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14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 1) 예탁자산인출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이 최소유지금액 미만인 되는 경우(고객은최소유지금액 미만으로 출금할 경우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 2)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3) 고객이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한 회사의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을 요청하는 통지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시 회사가 제공하는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의사를 표명하지 않거나, 투자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 고객이 예탁자산
 - 5)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전담 영업직원에게 전화 또는 내방에 의해서 일반해지, 청산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고객의 모든 재산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합니다.
4. 제3항에서 정한 청산해지는 고객의 예탁재산에 포함된 모든 투자자산의 매도 또는 청산을 말합니다. 일반해지는 고객이 투자자산을 청산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일부를 매도 한 후 해지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모든 자산의 수도결제 이후 가능하며, 고객은 계좌의 특정 투자자산의 매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재산의 인출

1.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임자산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기간 이전에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특정 투자일임자산의 인출 또는 처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투자일임계좌에서 보유중인 현금 또는 자산을 시장에 매각한 대금으로 지급하며, 보유자산을 회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4. 일부 보유자산의 시장 처분 불가, 증권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고객이 요청하신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

1.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자금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사전에 교부토록 합니다.
 - 1)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 2)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3)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4.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한 제3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단, 이러한 동의 간주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회사는 본 항의 통지에 해당 동의 간주 규정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 효율적 매매를 위한 주문처리에 관한 사항

1.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별 투자일임자산에 대한 개별적인 주문뿐만 아니라, 다수 고객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한 건의 주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개별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경우 고객 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며 투자일임계좌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1) 고객계좌별 주문기록 작성 및 보관
주문의 집합처리 전에 고객계좌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 2) 매매결과에 대한 고객 계좌별 배분
매매결과에 따른 자산은 계좌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며, 배분수량과 배분가격에 대한 기준은 제2항 제3호 배분기준에 따릅니다.
 - 3) 배분기준
 - (1) 배분수량
가. 1 차배분 : 체결된 비율대로 각 계좌에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 정수의 수량만을 배분
나. 2 차배분 : 정수로 배분 후 남은 수량은 체결배분량 중 소수점 아래의 비율이 가장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다. 3 차배분 : 체결배분량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주문수량이 큰 계좌부터 1 주씩 배분
라. 4 차배분 : 체결배분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배분
해당 매매종목정보에 따라 단주매매 종목인 경우 1주 단위로, 온주매매 종목인 경우 10주 단위(거래소가 지정한 호가 폭주 종목의 경우 100주 단위)로 상기 배분수량기준에 맞추어 배분처리합니다.
 - (2) 배분가격
주문체결 완료 후 매매종목에 대한 총 체결금액을 전체 체결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사용합니다.
 - (3) 배분금액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수량과 배분가격을 곱한 배분금액을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가장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같을 경우에는 배분금액이 큰 계좌부터 1원씩 배분, 배분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1원씩 배분하여 각 계좌별 배분금액을 산출합니다.
 - (4) 매매단가 및 수량
각 계좌별로 매매종목에 대한 배분금액을 배분수량으로 나눈 매매단가를 산출하되, 소수점을 포함하는 경우 소수점 원단위 미만 올림과 버림한 두개의 정수단가를 산출하고, 해당 단가별 수량을 계산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결제가 처리된 후 매매단가와 수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4) 특정계좌에서 자산구성이 투자일임자산운용자의 운용전략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기 배분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하여 배분기준을 달리 적용 또는 별도의 주문 집행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임원에 관한 사항

2025.12.31 기준

담당업무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성명	장병호	한종석	문여정	강성윤	이관휘

2. 대주주에 관한 사항

2025.12.31 기준

성명	관계	구분	주식수	지분율
한화자산운용	최대주주	보통주	98,867,172	46.08%
		우선주	364,652	7.60%

- 대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 본사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사항

직책	부장
성명	김종훈
주요경력	금융공학, OTC파생 및 파생솔루션 18년, 상품솔루션 및 랩운용 7년
자격 및 결격사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직책	부장
성명	조희철
주요경력	ELS헤지운용, 퀀트 모형 및 시스템 개발 15년, 랩운용 8년
자격 및 결격사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직책	차장
성명	이동훈
주요경력	영업점 4.5년, 리스크관리 3년, 리서치 3년, 랩/신탁운용 6년
자격 및 결격사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직책	과장
성명	안흥기
주요경력	영업점 및 랩운용 7년
자격 및 결격사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직책	대리
성명	박지연
주요경력	랩운용 4년
자격 및 결격사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없습니다.

본 계약권유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투자자유형과 랩 서비스 운용 유형

■ 투자자유형별 투자가능 랩 서비스 운용 유형

투자자유형	고수익추구형	수익추구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위험도	매우높은위험 (1등급)	높은위험 (2등급)	다소높은위험 (3등급)	보통위험 (4등급)	낮은위험 (5등급)	매우낮은위험 (6등급)
주식형	주식형(파생) 해외주식형 국내외주식혼합형	국내주식형				
채권형/ MMW형			채권형		증금형 MMW	
펀드형	펀드형 (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혼합형	혼합형 (운용되는 자산의 분류 기준 등에 의함)					
맞춤형	지점운용형 / 본사운용형					

* 서비스 별 세부 위험등급과 이에 따른 투자자유형은 각 랩 서비스의 핵심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랩 서비스 운용 유형간 구분 기준 및 예상위험 수준

세부 운용 유형	구분 기준	예상 위험수준
주식형	* 국내주식랩: 국내 상장 주식 및 ETF에 투자 (주식투자비중 0~100%) * 해외주식랩: 해외 상장 주식 및 ETF에 투자 (주식투자비중 0~100%) * 국내외주식혼합랩: 국내외 상장 주식 및 ETF에 투자(주식투자비중 0~100%)	* 국내/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며, 집중 투자의 특성상 시장의 등락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 국고채, 회사채 등 채권과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등에 투자	*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기대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MMW형	* 수시 입출식 서비스로, 한국증권금융 1일물 예수금에 투자	
펀드형	* 국내외 펀드에 투자	* 국내외 펀드에 투자함에 따라 금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됩니다.
혼합형	* 국내외주식 및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	*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시장위험, 신용위험, 가격 변동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맞춤형	* 국내주식 및 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며 1:1 맞춤으로 운용 * 지점운용형랩은 지점PB가 운용역으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사 결정을 일임받아 운용	*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시장위험, 신용위험, 가격 변동위험 등에 노출됩니다.